

제429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0월16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02)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7)

**상정된 안건**

- |  |   |
|--|---|
| 1.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br>(의안번호 2211502) .....  | 1 |
| 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br>.....                | 1 |
| 3.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7) ..... | 2 |

(10시01분 개의)

○소위원장 조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소위원회 회의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2)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

### 3.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7)

(10시03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의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1차 소위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고 지난 소위에서와 같이 조문을 취합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있는 한 페이지로 된 소위 심사 경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9월 29일에 개최된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제정안이라는 특성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문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고 해양수산 및 관련 기관과 기업들을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해수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법 체계와 맞지 않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미래의 직원들에 대한 정주·생활여건 등 고려도 반영되어야 되며 이전기관과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해운·항만 관련 부산 일극화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곽규택·김태선·조승환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과 1차 소위 토론 요지를 반영한 수정의견에 대해 조문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소위에서와 같이 법안 전체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의된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1차 소위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정의견(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안)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이를 하나의 특별법 안으로 작성한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자료 1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안)의 법률안 명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수정의견(안)은 1차 소위 토론 요지를 반영하여 재작성된 것으로 해수부 및 관련 기업의 이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조 목적 조항입니다.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1차 소위에서 쟁점 있는 문구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제외되었고 제정안들의 내용을 골고루 반영하되 ‘해양산업’ 문구는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공공기관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와 3호에서는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에 대해서 규정하되 1차 소위 토론에 따라 해양산업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정의) 제3호에서는 이전기업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다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은 해운업, 항만건설·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조(기본이념과 책무) 그리고 5페이지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1차 소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의 수정의견(안) 제5조는 이전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이전계획의 수립은 제도적 안정성 및 민간기업 이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 5항과 관련해서 혁신도시법상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제정안의 절차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도시법상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혁신도시법을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범정부적 규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수정의견(안) 제6조는 이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동 조항은 이전기관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2항에서는 이전기업의 경우 부산시장이 군수·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를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조승환 의원안과 광규택 의원안 중 해양산업 또는 해양수산산업 관련 규정들은 1차 소위 토론 내용과 관련 법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정의견(안)에서는 선택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비고란을 보시면 조승환 의원안 제6조(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의 지정 등)과 제12조(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택 공급 및 특례) 및 광규택 의원안 4조는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의견(안)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로 이동하여 산업특화 지원이 아닌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의 수정의견(안)은 제12조에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제정안의 내용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아래 7조는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비고란을 보시면 이는 이전기관 등의 개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김태선 의원안의 약칭을 삭제하고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으로 규정하였고. 제3항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김태선 의원안 2항의 주택도시기금 용자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정의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항에서는 부산시에서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 등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업무를 부산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서 이를 제6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조입니다.

제8조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선 의원안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안)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구분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안) 제9조에서는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 제2항에서는 국토부 의견을 반영하여 김태선 의원안 중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우선공급 부분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안) 제10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승환 의원안과 광규택 의원안을 통합 조정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제10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 해양특화지구의 기능으로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 공동주거시설 그리고 교육시설, 복합 편의시설, 업무시설, 그 밖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비고란을 보시면 국토부는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을 이전직원들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지구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용적률 한도를 120%로 조정하며 혁신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에 용적률 완화 사항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수정의견 제3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안) 제11조는 전·입학 편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제정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되 하위법령 위임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견(안)을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특별법안을 하나 작성해서 비치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수정의견에 저희들 동의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라는 목적 달성과 이주직원들의 지원을 위해서 이 법의 시급성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양수도 지원, 지금 지역균형발전 이런 이야기는 이 법문에서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보다는 정착 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정도가 지원이라는 용어보다는 더 조금 세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계속 주장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부대의견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여기는 국가직 공무원들이니까 국가직 공무원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인사혁신처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성적 순으로 쭉 선택을 해 나가는데 지금은 사실 해양수산부가 거의 최상위 부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만 딱 떨어져 가지고, 사실 혼자 가 있는 것도 외로운데 딱 떨어져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다 우수한 직원들이지만 그 안에서는 또 낮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 직원뿐만이 아니라 새로 오는 신입 직원들도 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다른 혜택은 필요 없는 거고 최소한 주택 지원에 관한 혜택은 받아야 된다 해서…… 그런데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토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좀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신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서 제외된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해양수도 육성을 위한 제정법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법률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저는 해양특화지구 지정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부처와 관계되는 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이주하는 공무원들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이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해양특화지구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명칭 자체가 해양특화지구라고 하면 이게 마치 공무원들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또 다른 산업이나 기관이나 기업이나 그런 것과 유사하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런 명칭이 적합한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차관님,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이전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하는 것은 예를 들면 부산의 대연동이라고 하는 데 대연혁신지구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것은 혁신도시법에 의한 혁신도시지구입니다. 그래서 한 13여 개의 공공기관 이전직원들에 대한 그런 지구를 지정해서 이런 주택 공급들을 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렇군요. 명칭 자체가 꼭 해양특화지구여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래서 아마 지난번 소위 이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혁신지구라고 하면 또 그 혁신도시법에 의한 혁신도시하고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해양 쪽에 관련돼 있는, 해수부를 비롯해서 해양과 관련된 기관의 이전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취지를 담아서 이렇게 명칭이 제안이 되고 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오늘 귀하게, 뒤에 파란색 조끼 입으신 분이 노조에서 오셨습니까?

○국가공무원노동조합해양수산부지부위원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앞으로 오셔 가지고 한 말씀 하시지요, 멀리서 오셨는데. 편안하게

말씀 주십시오.

○**국가공무원노동조합해양수산부지부위원장 윤병철** 수고들 많으십니다. 해수부지부 위원장 윤병철입니다.

먼저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직원들의 정주여건과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신 여야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해수부가 가서 해양수도가, 직원들이 부산에 가서 안정적으로 정주해서 이전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조에서도 일치단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장님, 조금 전에 조승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규로 채용이 되더라도 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좀 연속성 있게 하자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공무원노동조합해양수산부지부위원장 윤병철** 직원들의 삶의 여건을 담은 것 같아서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은 적극 환영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세종시에는 다른 공무원들이 다 몰려 계시지만 해양수산부 직원분들은 따로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배려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위원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국가공무원노동조합해양수산부지부위원장 윤병철** 조승환 위원님께서는 해수부 전임장관으로서 직원들에 대해 애착이,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조승환 의원님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차관님,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되면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세종으로 온다든지 서울로 올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산을, 공직을 지원해서 패스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부산에 연고를 둔 사람들이야 아주 기쁘게 지원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산 출신이 그 시험을 다 패스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우수한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또 지원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 내용을 담은 게 있나요, 법안에?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걱정해 주시는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번에 고시 출신 신입 예비 사무관들이 한 10여 명 새로 부처에 예비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저희들이 부산으로 간다는 게 발표된 이후에 해수부를 선택한 분들입니다.

저도 똑같은 걱정을 좀 했습니다만 실제로 온 예비 사무관들의 자원과 그것을 봤을 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자원들이 왔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부산 연고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부산 연고가 아닌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단기적인 지원과 주택 공급 지원 같은 것들이 촘촘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성안이 돼서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 그러면 더 훌륭한 자원들이 저희 해수부에 지원을 하고 와서 열심히 일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제 초점은 세종시에 대부분 부처가 다 있으니까 이쪽에 지원 확률이 비교적 높을 수 있고 부산은 단독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럴 수 있는데 향후에 해수부가 부산에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의, 그 떨어져 있을 때의 복안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산에 계속 혼자 있으면 전체 패스자가…… 나는 바다가 좋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연고자가 우선이겠지만. 한 해 고시 패스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서도 제가 볼 때는 본의 아니게, 결국 해수부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더욱더 우수한 사람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최소한 세종시하고 형평성은 맞게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말씀 감사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가장 큰 지원 혜택은 사실은 주택 공급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정의견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신규 직원들에 대한 주택 공급도 가능하게 되고요. 세종은 이미 특별공급이 끝났기 때문에 부산에 오는 직원들은 이 법에 의해서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걸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또 부처의 위상을 올려서 좋은 예비 직원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9조에 보면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10조에 이주직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혁신도시법을 우회한 또 다른 혁신도시를 지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국토부하고는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해양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각 호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9조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내용하고 특화지구를 지정해서 정주여건 개선하는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9조는 주로 경제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사비용 지원, 이주지원비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특화지구는 일정 구역을 지정해서 주택 공급이라든지 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적 사항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직원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취지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특화지구 내를 중심으로 정주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쪽에서 주택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면 상당수의 직원들이 그쪽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부처와 협의가 있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이다 보니까 혁신도시법을 가지고서 과거처럼 건물을 계속 지어 가면서, 세종처럼 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건물을 지어 가면서 특별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기재부 땅이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가 땅이지만 해수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토지들이 사실 많이들 있으니까 이것을 기존 혁신도시법에서는 배제해서 해수부에서 짓도록 하자……

○**문대림 위원** 다 협의가 됐다고 하고요. 이해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주 위원님.

○**주철현 위원** 차관님, 제가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과 관련된 특별법과 관련돼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당연히 해야 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시니까. 정부 지원, 부산시 지원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 거고. 혹자는 제가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던데 그건 제가 고소를 했어요, 유언비어 퍼뜨린 사람들을.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수부 부산 이전에 전폭적인 정부 지원 또 자체 지원이 있어서 빨리 정착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 이론이 없고 이의가 없어요.

다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돼서 모든 해양수산 관련 기관, 모든 단체, 모든 관련 기업들이 부산으로 집적하는 것은 명백히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부산 외의 다른 데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사실상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왔는데 이러한 저의 우려 또 민주당 동료 위원들의 우려에 관련돼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겁니까?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민간기업들의 부산 집적과 관련돼서는 해운, 물류, 해상교통 관련 기업들 이전만 지원하겠다고 돼 있고 나머지 민간기업들, 수산이나 관광 이런 것은 지원 않겠다 이런 것 외에 기관과 단체의 부산 집적을 전국에 있는 모든…… 울산, 경남은 빼 놨더라고요. 나머지 지역의 기관·단체들을 부산으로 집적화시키는 것을 방지할 장치가 있습니까, 대안에?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우선 위원님께서 부산 이전에 관해서 지지하시고 또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소위에서 모든 기관 또는 모든 해양수산 기업이 이전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도 그

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법안상 그렇게 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난번 주신 의견 감안해서 당초의 취지대로 해운·항만·물류와 관련돼 있는 기업만 이 법에 의한 이전기관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기관의 이전에 관한 것은, 이 법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일부라도 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이 법이 됐다고 해서 모든 관련 기관을 옮기겠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또 위원님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차관님 말씀대로 민간기업들은 해운·물류·해상교통과 관련된 기업들의 이전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범위를 줄였어요. 그건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해양수산 관련 기관,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전폭적인 지원, 여기에 수없이 많은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정부 지원, 재정 지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주택 지원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 그리고 또 최고의 정책결정 기관인 해수부에서 눈 한번 깜빡하게 되면 이전하는 걸 막을 방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려면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의 이전과 관련돼서 사전에 국회 상임위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해 놓지 않고 모든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부산 집적을, 결정만 하게 되면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전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 기관은 해수부장관이 한마디 하게 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이 법에 따르면.

아니, 이렇게 되면 부울경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들이 어떻게 남아나겠습니까? 저는 절대 기관들이 못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생리상. 그렇잖아요. 그걸 무슨 말로 해야 됩니까? 사실상 정책 하면서 약간의 힌트만 주고 약간의 그런 것만 하게 되면 우르르 다 몰려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된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북극항로 관련해서 해운강국으로 가는 데 부산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해수부가 그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하신 거고, 또 123대 국정과제에도 해운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HMM, 해운 관련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틈타서 지금 해수부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 전체를, 단체 전체를 우르르 몰고 가서 거기다가 해양수산수도를 건설한다는데……

해양수도, 뭐 좋아요. 그 말에는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산인들 또 해상풍력 관련 자원개발 하는 분들, 해양레저·관광 이런 분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다 몰아가려 그러십니까?

아니,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차관님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뀌고 장관 바뀌면 그다음 장관이나 차관이 와 가지고 ‘어, 법이 있네? 법대로 하지 뭐’ 해 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막냐고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 모든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가 부산으로 간다는 말씀은 좀 지나친 우려시고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4개 내지 6개 정도를 대상으로 일단 검토 중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수정의견 제5조에 따른 이전계획의 수립은 모든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전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선정됐을 경우에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협의 절차 등을 거쳐서 구체적인 것을 이행한다는 근거를 마련한 그런 조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물론 장관님께서 차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장차관은 수시로 바뀌는 거고, 바뀌게 되면 후임 장차관이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4~5개의 공공기관 이전 외에는 없다라고 누가 담보를 하고, 그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지킬 거예요?

아니잖아요.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해당 공공기관도 옮겨 가게 되면 신청사에서, 해수부 가까운 데서 더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옮겨 가지요. 가만 놔둬도 옮겨 갈 거예요. 모르겠어요. 수도권에 있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지역에 있는 건 다 옮겨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을, 하여튼 간에 아까 말했듯이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 수정안에 보게 되면 이전기업에서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기업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부산 기업 제외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왜 울산·경남 기업만 제외합니까? 그것 왜 그래요? 왜 차별해요? 나머지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나 전라북도는 지역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법을 차별되게 만들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지역색이 너무나 묻어나는 지역 차별적인 입법입니다. 그래서 이것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런 공공기관, 필요하게 되면 해수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일부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해수부가 지방균형발전을 기한다면 해수부 본부가 부산으로 갔으면 나머지 기관들을, 수산 관련 기관은 전남으로 또 무엇 관련 기관은 인천으로 보내 줄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틈 삼아서 모조리 끌고 가 가지고 부산에 집적시켜서…… 그러면 나머지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게 대통령 뜻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차관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님, 저희들 모든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 이전한다는 계획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럴 일도 없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을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님, 국회 소위든 상임위든, 특히 또 어제와 같은 국정감사장은 엄중한 자리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장관·차관이 국회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책임 있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책임감이 따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차관님, 그러면 그 말씀을 제도화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 이전은 당연한 거고 해수부 산하의 해양수산 기관들, 단체들 이전할 때는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말 지킬 수 있잖아요. 충분히 국민께 설명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는 자리니까 그렇게 이 법안에 단서를 달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것은 우리 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동의하시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당당하시면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타 입법 사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철현 위원** 아니, 이런 입법 사례가 없어요. 무슨 타 입법 사례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혁신도시……

○**주철현 위원** 차관님, 이런 입법 사례가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관님.

이 상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해양수산 기관과 단체의 부산 짐작을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잠깐만요.

차관님,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다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 조항은 빼도 관계없다는 게 전문위원들 의견도 일치하거든요. 이 조문은 빼도 되겠지요? 굳이 이것 넣을 필요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사실 원래 취지는 부울경에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 뺀다는 취지였는데……

○**소위원장 조경태** 그렇게 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다만’ 이 부분은 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조경태** 또 계속……

○**조승환 위원** 제가……

○**소위원장 조경태** 조승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주철현 위원님,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것은 제가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삼혁신지구라고 해서 해양수산 관련된 기관들이 사실 부산에 이미 짐적이 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저는 생각에, 기업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산 쪽은 뺏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기관 부분인데 사실상 옮겨 올 기관이라는 게 4~6개라고 장관이 이야기하시는 데 지금 수도권에 있는 것은 사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그다음에 해양환경공단…… 그런데 해양환경공단의 한 반 정도는 부산 동삼지구에 와 있고, 그 당시에 그게 공공기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못 간 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 그다음에 어촌어항공단, 그게 옛날에 어항협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정도의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더 가지고 오려고 그래도…… 그리고 아마 항로표지기술원 그다음에 해양조사협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장관님은 4~6개다 그러는데 그것 인력 20명, 30명짜리 기관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실 그게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어 있는 거지, 저는 이 3개 정도의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더 옮겨 올 게 현실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촌어항공단은 서울에 남겨 놔라, 나중에 위원님이 가져가시겠다 이런 의견이시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부분은 옮겨 갈 기관이 크게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잘 아니까 부산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 두 분 위원님 전부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의 삭제 의견을 내시고 전문위원님이 동의하신 부분도 이게 부산·울산, 부울경 중심으로 이렇게 집적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원에 관한 책무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부울경은 제외한다라는 의미, 지원에 대한 책무를 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을 굳이……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놔둬도 된다, 놔둬도 의미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부울경에 현재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원을 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차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부울경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해양산업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주철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법안에서 민간기업 이전의 상임위 동의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무리하다고 봐지고.

다만 어제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마는 북극항로와 관련해서 항만별 기능 분담 용역을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내년에 실시하려고 지금 예산을 국회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 용역 결과에 따른 국가계획들이 수립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과정에 여수·광양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특히 제주라든가 이렇게 해서 항만별 기능 분담과 해양·항만산업 활성화 방안까지 담아내서 그것을 국가계획으로 집어넣는 이 정도의 해수부의 약속, 그렇게 해서 부울경 이외의 해양·항만 분야의 공동화 이런 것들을 예방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약속 이 정도를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해양수산부로서는 우리 국가 전체의,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관련해서 각 극과 각 특에, 바다를 대부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양수산발전전략을 저희들이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게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단독인 국가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는 지방 전략 차원에 녹여 들어가서 또 국가 전체적인 대책으로도 포함을 시켜서 국가가 중심이 돼서 지방시대위와 해양 지자체와 힘을 합해서 각 권역과 지역의 해양수산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국가계획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특히 그 과정에 여수, 광양, 평택, 제주, 화성……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신뢰하고 이 법안을 저는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주철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차관님, 아까 문대림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계획도 세워서, 또 용역하고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사전에…… 이게 민간기업이 아니고, 기업 이전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해수부 산하 기관·단체의 부산 이전과 관련돼서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하여야 된다고 해서 국회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조항 하나 넣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 없잖아요, 지금. 사실상 보고하면, 보고하고도 강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산하 기관·단체의 부산 집적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정도 넣을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다른 공공기관 이전을 규정하는 법에도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만 더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이 법 자체가 특별법 아니에요? 공공기관 이전하려면 다른 공공기관 이전 지원법 일반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 되는데 특별히 만드는 법이니까 이제 우려를……

그러니까 제가 공개리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산 관련 기관·단체까지 다 쓸어 가려고 하냐고. 이것 저 혼잣말입니까? 우리 전남 수산인들을 대변하는 거고 전국 모든 지역의 수산인들, 바닷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인데 그걸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시다면 보고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전계획을 보고하여야 된다’ 이 정도로 부칙에 단서를 달고 가시면 어떨까요? 저도 빨리 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경태** 예, 이 위원님.

○**이병진 위원**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은 사실상 옮겨 갈 공공기관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차관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맞습니다.

○**이병진 위원** 역으로 하면 굳이 법으로 강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사실상 옮겨 갈 게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대사업인 해양수산부 이전이 가장 큰 목표인데, 주요 골간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거기에 공공기관, 산하기관 몇 개 때문에…… 신속하게 법이 통과돼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그건 빼고 진행해도 되는 거고.

또 그것의 대안으로 본사라고 하나요? 본사는 있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항에 지점, 부본부는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지를 남긴다든지 이렇게 사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주철현 위원님 얘기는 저는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전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그게 타기팅인데 부수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

저는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안 했지만 사실상 옮겨 갈 기관이 별 거 없다 그러면 그것 빼 버리면 되잖아요, 아예.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것, 지엽적인 것은 버릴 필요도 있는 거란 말이지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정주여건이라고 보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이든. 그 사람들이 편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니까 그것은 대찬성하고 공공기관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부분부라든지 지점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들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 차관님, 아까 주철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입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확신은 어떻게 가져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해당 기관이전에 관한 주요 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넣어 달라는 주철현 위원님의 말씀에 마치 다른 공공기관 이전 등에 이런 예가 없고 입법체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법률적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양보를 하고 주철현 위원님 입장을 받아 주는 것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상당히 유의미한 결정이다라고 봐집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취지를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기관 이전에 관한 주요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집어넣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소위원장 조경태** 마음에 안 들면 오늘 통과 안 시키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찬성합니다. 저도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조승환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도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주철현 위원** 아니, 해수부 이전만 돼 있어요.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른 이야기들이 다 있다고요.

○**주철현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된다는 것을 넣는 것에 대해서 조승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환 위원** 예, 정부에서만 동의한다면 입법 사례는 없지만……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에서도 관계없으시겠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소위원장 조경태** 이건 보고하고 나서 또 추진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 주철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주철현 위원** 강행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때 또 국민 대표 의견 듣고

하면 좋잖아요.

○조승환 위원 그냥 어촌어항공단은 서울에 둔다로 할까요?

○주철현 위원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자꾸……

○소위원장 조경태 그건 부산에 와야 됩니다. 부산에 와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주재하는 공공기관은 부산으로 와도 관계없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 취지를 수용하고요. 구체적인 문안은 상임위 통과 때까지 마련해서 하시는 걸로……

○소위원장 조경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게 약간 충돌되는데 ‘이전기업이란’ 여기에서 ‘다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는 문대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재하는 기업들에 한해서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조문을 넣어 놔도 별 관계없겠다 하는 말씀인데 주철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빼까요, 넣을까요?

○주철현 위원 아니, 저는 부산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부산에서 부산 이전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울산·경남 기업들의 이전만 혜택이 없다는 것은 또 울산·경남만 보호한다는 이런 반어적 의미로 해석이 돼서 괜히 지역 차별이라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빼까요?

○조승환 위원 저는 안 뺐으면 좋겠는데요.

발언권 신청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조 위원님.

○조승환 위원 저는 빼도 되고 안 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문대림 위원님 의견에…… 이게 오히려 더 역차별 부분이 생긴다……

○문대림 위원 더 역차별적인 내용도……

○주철현 위원 그게 아니고요. 부산 가까이 있는 창원이나 진해 같으면 괜찮은데 끝에 있는, 남해에 있는 이런 건 호남이나 마찬가지예요, 전남이나 똑같이. 그런데 그쪽에서 아니, 바다 건너 저쪽에서 이전하면 지원이 있는데 우리는 왜 지원이 없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위원장 조경태 맞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소위원장 조경태 큰 틀에서 보셨네요.

문대림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께서 크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뺍시다. 이건 빼도 크게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제가 고향이 남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풀어 놨을 경우에는 마산·창원에서 부산으로 올 기업이 훨씬 더…… 아마 마산·창원하고 서부경남인 서천호 위원 지역구 남해·하동·사천 그리고 진주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여기 올 기업하고 비교해서 저는 한 100배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창지구에서 넘어오는 부분은 조금 막아 놓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서부경남, 동부경남을 나눠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건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송옥주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조경태 송 위원님.

○송옥주 위원 저는 이 3호 이전기업 관련된 것의 '다만'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게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소재 기업과 관련된 결정 권한이나 그런 게 어딘가에는 필요할 텐데 해수부장관이라든지 아니면 해수부에서 이것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지에 대한 권한을 어딘가에 부여하는 부분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보니까 이전기업 관련된 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전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 범위라든지 내용이나 권한이나 여러 가지 주요한 핵심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어딘가 다른 곳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오늘 통과 안 되겠는데……

○주철현 위원 오늘 통과시킵시다. 다 해결됐잖아요.

○소위원장 조경태 그리고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 제명하고 그다음에 부대 의견에 대해서 이걸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걸 바탕으로 한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표현을 저도 썼습니다마는 지금 앞에 국가경쟁력으로 다 갔습니다, 목적도 그렇고. 이게 지방 이전, 물론 내용은 이전 내용입니다마는 목적이나 책무나 이런 데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용어가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착 기반 조성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렸고.

그다음에 부대의견 부분에 첫 번째로 향후에 신입, 해수부로 전입하는 직원들도…… 아주비, 이사비 이런 거야 필요 없는 거고 최소한 주택 공급 규칙에 의해 가지고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은 하는데, 해수부하고 국토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신뢰가 사실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넣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해양산업, 북극항로와 관련돼 가지고, 또 북극항로 외에 해양수산산업과 관련된 어떤 발전을 위한 법 제정 이런 걸 적극 추진하자라는 취지에서 부대의견을 달고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견 있습니까?

○조승환 위원 시원하게 동의해 주십시오.

○주철현 위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좀 많이 나가면……

'해양수도' 쓰는 문제도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은 좀 부담이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다가 이렇게 써 버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결과가 돼서 저희로서는 큰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대승적으로 제가 수용을 하고요. 그냥 정부에서 낸 것처럼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이렇게 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해수부를 믿고 가시지요.

○ 소위원장 조경태 좋습니다.

다음에 또 개정안도 낼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완성도를 더 높이면 좋겠지만 이건 의견들이 있으시고 또 저도 해양수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담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주철현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주신 내용은 부대의견으로……

○ 주철현 위원 「국회 보고」 해 가지고 13조로 해수부장관은 공공기관·단체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걸 딱……

○ 소위원장 조경태 그것하고 또 지금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직원에 대해서 한다는……

○ 주철현 위원 그것도 부대의견 넣으시는 것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이건 동의하는 걸로요.

그래서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고, 그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아주 역사적인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 출석 위원(7인)

문대림 서천호 송옥주 이병진 조경태 조승환 주철현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완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정책기획관 권순우

부산이전추진기획단 김성원

국가공무원노동조합해양수산부지부

위원장 윤병철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해양수산부지부  
지부장 이상국